

대회참가 보조금지급 규정

GNSAD

대회참가 보조금지급 규정

제정 2007. 08. 16

개정 2012. 02. 24

개정 2013. 02. 22

개정 2019. 02.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종목별 대회참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제3조 (재원)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경상남도가 편성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 (용도) 보조금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기실적이 인정되는 종목별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우선 배정되어야 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국제친선교류, 인건비·행정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7.>

제2장 편성 및 배정

제5조 (확보) 장애인체육회는 전년도에 익년도의 보조금 사용계획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6조 (연간 배정) ① 장애인체육회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의 지원실적·기여도·재정규모·정책우선순위·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별 연간 배정액을 매년 연초에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보조금외의 특별지원비로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 및 선수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승인)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연간 배정액을 통보받은 후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양식(연간 종목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간대회 참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시 사업회계책임자 재정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4>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이사회 및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제출한 연간 대회 참가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한다.

④ 회장 또는 대표자 유고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얻어 일부 집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은 지원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하되, 필요한 경우 자금교부 시기 및 자금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행

제8조 (사용범위) 보조금의 사용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별 예산 편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장애인체육회 직접 집행시 대회 규모, 출전선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2019. 2. 27.>

1. 숙식 및 참가비를 주최 측이 지원하는 대회일 경우

- 【별표 1】 지원항목을 기준으로 1인당 50,000원

2.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대회일 경우(참가비 지출대회)

- 【별표 1】 지원항목을 기준으로 1인당 70,000원

3. 기타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 국가대표 선발선수, 임원 격려금

나. 경기용 장비(배, 휠체어 등) 이동, 중장비 이용 등이 필요한 종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 지원 할 수 있다.

다. 기타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 제3호는 경기단체 교부 예산내에서 경기단체 직접 집행 불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본회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항목 외 사용의 금지)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에 정한 범위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잔여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내용변경)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 추가 또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결과보고)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매 사업종료 후 단위 사업별로 장애인체육회가 명시한 기한내 정하는 양식(보조금 정산서식)에 따라 보조금 사업 결과 보고서와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4>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양식

(종목별 연간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결과 처리) ① 장애인체육회는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전항의 지원사업 사용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확정한다.

제4장 변경, 취소 및 반환

제13조 (배정액 변경) 장애인체육회는 제6조에 의한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별 보조금 확정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배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규정 및 지원비의 교부결정의 내용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전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보조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 신청)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의 서류검토와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반환명령)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타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토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설정하고, 타 계정과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보조금·자부담의 계정을 구분 설정하고, 보조금계정 항에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세항에 “대회참가보조금”을, 목에 “사업명”을 각각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책임자 임명 및 조치)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출납을 관장할 재무관

(전무이사 또는 총무이사 이상), 지출원(사무국장 이상), 회계관련 직원(정식상근직원 1명)을 선정하고, 지출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보험(총 한도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시 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해당 단체의 모든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을 제한토록 한다. <개정 2012. 2. 24, 2013. 2. 22>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재무관 및 지출원과 회계관련 직원에 대한 입면 관리 및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가 이를 조치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19조 (불이익 처분)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본 지침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정산, 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지원비를 감액하거나, 당해연도 일정기간 동안 지원 중단 및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2. 24>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2. 22>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2. 27>

【별표 1】 대회참가 보조금 사용범위 <신설 2019. 2. 27.>

구분	지원항목	내용	비고
숙박비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이하	
식비	식비	1식 8,000원	
대회참가비	주최 측 납부 참가비	실비	
교통비	유류비, 도로비	실비(본회 특장버스 포함)	
항공료	항공료	실비(제주도 대회만 허용)	
임차비	렌터카	실비(제주도 대회만 허용)	
	장비이송, 중장비 이용 등	실비(차량, 중장비 등)	
격려비	국제대회 참가 격려비 (가맹경기단체 확인 후 지급)	300,000원 이하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200,000원 이하 (비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 간식비(커피, 음료, 다과 등) 사용 금지

※ 대회참가 시 장비이송, 중장비 이용 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맹경기단체에 교부된 대회참가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